

신용보증신청서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택주소				주택전화번호	
본인주택소유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사회적배려대상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type="radio"/> 부	이메일주소	
근로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직(자영업자, 연금소득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등			연소득	원
직장(업체)명		근무부서(업종)		직위	
직장(업체)주소				직장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입사(개업)일	년 월 일	우편물송달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신청내용

보증부대출신청금액	금	원 (₩)			
보증기간(대출기간)	<input type="radio"/> 3년 <input type="radio"/>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자금용도	생계자금	거치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미선택	신청은행	카카오뱅크

- 본인이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는 진정한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위조서류로 밝혀질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20년 월 일 위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대출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 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

신용보증거래약정서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이하 "채권자")와의 대출약정 체결을 위하여, 서금원으로부터 「서민의금융생활지원 관련법률(이하 "서민금융법")상 신용보증(이하 "보증")을 받기위해이약정을 체결하며,본인은이약정에서정한내용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속합니다.

제 1 조 보증거래 조건

- ① 본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금원에게 보증을 부탁드립니다.

보증종류	대출보증	보증료율	연 %
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년		

채권자	은행	자금용도	생계자금
-----	----	------	------

- ② 제1항의 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법령 및 서금원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제1항의 주채무에 추가로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③ 제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란 제1항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서금원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합니다.

제2조 신용보증방법

- ① 서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하여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보증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서금원과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서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의 방법으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은 발급된 보증서에 의하여 서금원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 ① 본인은 서금원이 제1조제1항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채무 잔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을 적용한 보증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대출약정에서 정한 매 회차별 대출원리금 상환 시 서금원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를 동시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대출금 이자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보증료를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보증료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기한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서금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료율과 보증료의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제4조 주채무 등 이행의무

본인은 서금원이 보증한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 ① 본인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이의 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주채무 등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3. 채무자생필품신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청자가 신청한 때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5.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6.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7. 서금원이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 또는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한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에 본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본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서금원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이의 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이 약정서 제3조, 제8조, 제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은 서금원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서금원에 대한 구상채무와 관련한 담보유무에도 불구하고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
- ④ 서금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전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서금원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변제에 사용

2 서금원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

- ⑤ 제3조제2항의 경우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사전구상금은 신용보증약관 제14조제1항의 보증사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서금원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채권자와 본인 간 약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 채권보전조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 없이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7조 통지의무

- ① 본인은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상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상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채무의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서금원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즉시 그 사실을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서금원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서금원에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담보

- ① 본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서금원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인에게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서금원이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금원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9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 ① 서금원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금원은 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서금원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이 신고한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신고주소 대신에 새로운 주소로 통지함)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 ①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서민금융법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서금원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 ②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서금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자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 대위담보권으로부터의 변제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서금원은 대위변제자로서 본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하여 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본인의 변제금액 또는 서금원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 ① 본인은 서금원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전쟁, 천재지변, 재해 또는 운반도중의 사고 등 서금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

◦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서금원이 대신 지급한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금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보증채무 이행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구상채무 상환일까지의 손해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본인은 보증신청시 제3자와의 공모·지시에 따라 위·변조서류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금원 보증신청을 통해 수령한 자금을 불법적인 행위(유사수신, 외화유출, 도박, 불법투자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보증서가 즉시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한 채권회수·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서금원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 및 채무관련 신용정보 등을 설명하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서 설명 듣고, 사본 받았음'란에 자필로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를 말합니다.